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0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:이종성·박대수·김용판

김기현 • 신원식 • 이태규

김형동 · 정운천 · 김태흠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·폐기 명령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모호하여 실효적인 규제 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 · 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 지명령을 추가하여,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 4조). 법률 제 호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 중 "회수"를 "판매중지·회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회수를 명하거나"를 "판매중지, 회수,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회수"를 "판매 중지·회수"로 한다.

2.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<u>회수</u> ・폐기 및 공표 명령	제34조(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
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	공표 명령 등) ①
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	
위해의 정도에 따라 <u>회수를 명</u>	<u></u> 판매중
<u>하거나</u> 공중위생상의 위해를	<u>지, 회수,</u>
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	
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	
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	
할 수 있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	2.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
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	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
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	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
정되는 의료기기	의료기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	③
위해 정도에 따른 <u>회수</u> ·폐기	<u>판매중지·회</u>
등의 기준과 방법, 공표의 방법	순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	
리령으로 정한다.	